

수원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87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3 선고 2019가합10259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면

담당변호사 성기강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6.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3. 선고 2019가합10259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5. 25. 접수 제3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가 불복,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가 매매당사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제1심 공동피고 C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갑 제41, 43, 44호증”을 “갑 제41, 43 내지 4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및 제7쪽 제17, 18행의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2. 2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C가 불복,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위 C 부분은 이미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는 2016. 10.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실소유주가 원고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등 명의로 하였습니다. 원고가 명의변경을 요구할 경우 명의변경에 응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사실확인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강선아, 판사 신동주

별지

1) 피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2022. 4. 21.)에 이르러 G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기한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기존 주장 내용들을 비롯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이 법원의 2021. 9. 7.자 석명준비명령 포함), 해당 증거신청으로 인한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제17호증의 1, 2)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위 증거신청을 미리 할 수 없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정한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